

심 사 보 고 서

—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—

의회운영위원장 이 명 기

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년 02월 07일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: 2022. 01. 24.
- 나. 발 의 자 : 이선명 의원 외 9명
- 다. 회부일자 : 2022. 01. 24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2. 02. 07.

(제22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이선명 의원)

가. 제안이유

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(안 제3조제1항)
기존) 부위원장 1인 → 변경) 부위원장 2인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백혜자)

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인원 중 부위원장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김천시조례 제 호

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인을”을 “2인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 인 및 부위원장 <u>1인</u>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.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3조(구성) ①----- ----- <u>2인</u>을 ----- ----- 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